



2018학년도 제4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소집통보일자	2019. 01. 14
위원정수 : 9명	재적위원 : 9명

1. 일 시 : 2019년 1월 21일(월) 오후 13:30
2. 장 소 : DIT 본관 2층 대회의실
3. 참석위원 : 8 명(위원장 : 김경화, 위 원 : 조정우, 김순경, 강혁준, 전선배, 김태우, 현나래, 윤종오)
4. 불참위원 : 1 명(위 원 : 이성율)
5. 참석교직원 : 0 명
6. 안 건

제1호 의안) 2018회계연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제2호 의안) 2019회계연도 본예산(안)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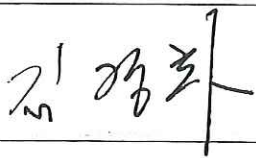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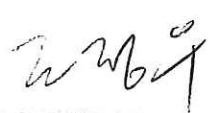
제3호 의안) 2019회계연도 교비회계 잉여금 처리 원칙(안) 심의

제4호 의안) 2019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안) 심의

제5호 의안) 등록금심의위원회회의록 간서명 추천

7. 회의내용

가. 개회

	김경화 위원장	조정우 위원	김태우 위원
<간서명>			

- 김경화 위원장이 9명 재적위원 중 8명 참석으로 회의 성립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하고, 2018학년도 제4차 등록금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하다.

나. 안건 심의

제1호 의안) 2018회계연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 기획부 홍성표 직원이 2018 회계연도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표 개요를 설명하다.
 - o 2018 회계연도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예산 자금예산서(안)
- 전선배 위원이 2018학년도 명예·조기 퇴직자 발생에 대한 퇴직금 지급재원에 대하여 질의하다.
- 기획부 홍성표 직원이 2018학년도 발생한 명예·조기 퇴직교원 퇴직금 지급재원으로 등록금회계를, 직원 퇴직금 지급재원은 비등록금회계(퇴직기금인출)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임을 설명하다.
- 기타 질의사항이 없어 김경화 위원장이 전 위원들의 동의로 2018 회계연도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찬성 : 8명, 반대 : 0명)

제2호 의안) 2019회계연도 교비회계 본예산(안) 심의

- 기획부 홍성표 직원이 2019 회계연도 교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표 개요를 설명하다.
 - o 2019 회계연도 교비회계 본예산 자금예산서(안)
- 강혁준 위원이 등록금 동결 및 입학자원 감소로 2019회계연도 본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없었는지 질의하다.
- 기획부 홍성표 직원이 대학행정부서·학과별 사업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협조요청하였으며, 이후에도 교직원 보수 동결 및 수당 조정을 통하여 2019 회

	김경화 위원장	조정우 위원	김태우 위원
<간서명>	김경화	조정우	김태우

계연도 교비회계 본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설명하다.

- 조민준 간사가 교비회계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동의과학대학교가 대학혁신지원사업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원받는 국고예산과 연계하여 교비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추후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때 감안할 것임을 설명하다.
- 김태우 위원이 기숙사 내 인터넷 통신장비(Wifi) 노후화로 인한 교체 예산 확보에 대해 질의하다.
- 조정우 위원이 신축된 기숙사 집기비품 및 소모품 우선예산배정으로 인하여 인터넷 통신장비 교체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된 바가 없으나,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시 여력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다.
- 기타 질의사항이 없어 김경화 위원장이 전 위원의 동의로 2019 회계연도 교비회계 본예산(안)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찬성 : 8명, 반대 : 0명)

제3호 의안) 2019 회계연도 교비회계 잉여금 처리 원칙 심의

- 기획부 홍성표 직원이 2019 회계연도 교비회계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잉여금 처리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다.
- 사립학교법 제32조의3(이월금) 및 이월금 정의와 종류
- 교비회계 잉여금 발생 시 처리원칙
 - ①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 이월금의 최소화에 노력함
 - ② 이월금 중 구체적인 예산절감, 사업취소, 불용액 등의 교비회계 잉여분이 존재하는 경우 직접교육비에 지출할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중 장학금, 연구학생경비, 도서구입 순으로 우선 편성함
- 별 다른 질의가 없어 김경화 위원장이 전 위원 동의하에 제3호 의안인 잉여금 처리 원칙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찬성: 8, 반대: 0)

	김경화 위원장	조정우 위원	김태우 위원
<간서명>	김경화	조정우	김태우

제4호 의안) 2019 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심의

- 기획부 홍성표 선생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47조에 대하여 설명하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47조(법인부담금)①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경영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 2019 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970,000 천원 중에서 법정부담전입금예정액 50,000 천원을 제외한 920,000 천원을 학교부담신청금액으로 요청하다.
- 기타 질의사항이 없어 김경화 위원장이 전위원의 동의로 2019 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심의가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찬성:8, 반대:0)

제5호 의안)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간서명 추천

- 김경화 위원장이 사립학교법 제18조2제2항에 의거한 간서명 대표위원을 추천받다.
- 김순경 위원이 간서명 대표위원으로 김경화 위원장, 조정우 위원, 김태우 위원을 추천하다.
- 전 위원이 간서명에 대하여 동의하다. (찬성:8, 반대:0)

다. 폐 회

- 김경화 위원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김경화 위원장	조정우 위원	김태우 위원
<간서명>	김경화	조정우	김태우

위 사실을 확인함.

2019. 01. 21.

위 원 장	:	김 경 화	(인)
위 원	:	조 정 우	(인)
위 원	:	김 순 경	(인)
위 원	:	강 혁 준	(인)
위 원	:	전 선 배	(인)
위 원	:	김 태 우	(인)
위 원	:	현 나 래	(인)
위 원	:	윤 종 오	(인)

위와 같이 심의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19. 01. 21.

동의과학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

이사본은 원본과 상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동 의 과 학 대 학 교 총 장 귀하

